

의안번호	2200874
의 퇴 인	권영세의원
회 답 일	2024.6.27.
추계번호	24B12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4년 주기로 시행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과 제3종시설물 중 C등급 이하인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979억원, 2030년 221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3,648억원(연평균 730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안 제12조제1항)	2,979	165	131	152	221	3,648	730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진단주기가 확정될 경우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안 제3조 (국가등의 책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u>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u>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안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u>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안 제23조 (긴급안전조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u>시설물이 제16조¹⁾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u>	의무규정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된 경우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안 제24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 및 미추계 근거사유
1	안 제3조 (국가등의 책무)	×	• (제3호) 수시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현 시점에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안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추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3	안 제23조 (긴급안전조치)	×	• (제3호) 긴급안전조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 조치의 내용, 보수·보강 사항이 시설물별로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24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1)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2조제1항)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계함
 - 현행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12조제2항에서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어야 하나, 현재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제출의견을 참고하여 제2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D등급과 E등급 시설물에 대하여 4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정밀안전진단비용은 현행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비용을 준용하며,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함
- (안 제12조제3항) 개정안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제2종시설물과 제3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계함
 - 현재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제출의견을 참고하여 30년 경과 제2종시설물과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²⁾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2)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023. 11)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3.4	2.4	2.2	2.2	2.1	2.1	2.1	2.1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12조제1항) 제2종 시설물중 안전등급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4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은 대상물량에 진단비용을 곱하여 추산함
-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제2종시설물 중 D등급과 E등급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이 총 47개소이며, 추계기간 동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제2종시설물 D·E등급 시설물 통계

구분	교량	터널	건축물	항만	상하수도	하천	댐	옹벽	절토사면	총계
D등급	17	0	5	0	0	9	2	1	9	43
E등급	1	0	1	0	0	1	0	1	0	4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매년 정기안전점검 대상이었던 동 시설물에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비용에서 현행 안전점검 비용을 차감하여 추산할 수 있음

[표 3] 제2종시설물 D,E등급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
D·E 등급	현행	점검	점검	점검	점검	점검	-
	개정안	진단	점검	점검	점검	진단	2회 실시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

[표 4] 제2종시설물 D,E등급 정밀안전진단 실시비용: 2024년 단가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시설물 수		제2종 점검 단가 (a, 천원)	제2종 진단 단가 (b, 천원)	추가재정소요		합계 (C+D)
		D등급 (A)	E등급 (B)			D등급 (C=A×b-A×a)	E등급 (D=B×b-B×a)	
교량	도로교량	17	1	12,058	62,859	864	51	915
댐	용수전용댐	2	—	22,873	62,830	80	—	80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3	1	5,352	55,397	150	50	200
	대형건축물	1	—	5,622	60,796	55	—	55
	철도역시설	1	—	3,138	33,357	30	—	30
하천	하구둑	1	—	43,057	57,228	14	—	14
	수문 및 통문	3	—	5,803	27,594	65	—	65
	제방	1	1	6,337	73,000	67	67	134
	배수펌프장	4	—	11,677	43,431	127	—	127
옹벽	도로옹벽	1	1	2,081	28,331	26	26	52
절토 사면	도로사면	7	—	10,292	96,319	602	—	602
	기타사면	2	—	12,503	47,573	70	—	70
합계		43	4	—	—	2,151	194	2,345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

- 제2종시설물은 추계기간 동안 동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점검 및 진단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 이상의 가정에 따라 제2종시설물 중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4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이 2026년과 2030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표 5] 제2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정밀안전진단 의무 실시 (안 제12조제1항)	2,449	0	0	0	2,659	5,108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현재 기준 제2종시설물 중 D등급과 E등급 시설물에 대하여 4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진단주기가 확정될 경우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안 제12조제3항)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한 안전등급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재 예측하기 곤란함

- 다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30년 경과 제2종시설물과 제3종시설물 중 C등급 이하인 시설물에 대하여 추계기간 동안 정밀안전진단을 1회 실시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함
- 추계기간 동안 제2종시설물과 제3종시설물 중 C등급 이하인 시설물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6] 제2종시설물 중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대상: 2026~2030년

(단위: 개소)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교량	도로교량	476	35	30	23	25
	복개구조물	8	0	0	1	0
	철도교량	36	0	0	0	0
터널	도로터널	3	0	0	0	0
	지하차도	3	0	0	0	2
	철도터널	4	0	0	0	0
항만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3	0	0	0	0
	계류시설	7	2	0	1	0
댐	용수전용댐	281	13	7	10	3
	지방상수도전용댐	6	0	0	0	0
건축물	공동주택	0	0	0	0	0
	다중이용건축물	210	16	11	11	3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대형건축물	87	6	3	3	3
	지하도상가	4	0	0	0	0
	철도역시설	4	0	0	0	0
하천	하구둑	31	1	0	0	1
	수문 및 통문	98	5	3	1	14
	제방	12	0	0	0	0
	배수펌프장	113	21	4	16	16
상하 수도	지방상수도	17	1	0	0	0
	공공하수처리시설	4	0	0	1	0
옹벽	도로옹벽	0	1	0	0	0
	철도옹벽	11	0	0	0	0
	건축물옹벽	7	0	0	1	0
	기타옹벽	1	0	0	0	0
절토 사면	도로사면	448	28	29	56	106
	철도사면	1	0	0	1	0
	건축물사면	2	0	0	1	2
	기타사면	5	1	0	0	0
합계		1,882	130	87	126	175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

[표 7] 제3종시설물 중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대상: 2026~2030년

(단위: 개소)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교량	도로교량	2,540	186	148	114	120
	철도교량	255	0	1	0	0
	육교	75	10	5	4	5
터널	도로터널	12	1	1	0	1
	지하차도	15	0	1	3	2
	철도터널	169	0	0	1	0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1,555	22	27	25	13
	대형건축물	342	9	8	8	6
	기타시설물	278	4	6	3	3
옹벽	도로옹벽	7	0	0	0	0
	건축물옹벽	21	0	0	0	0
	기타옹벽	2	1	0	0	0
합계		5,271	233	197	158	150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라 현재 격년(C등급) 또는 매년(D·E등급) 안전점검이 실시되었던 시설물에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안전진단비용에서 현행 안전점검비용을 차감하여 추산할 수 있음
-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단가와 2024년 기준 시설물 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8] 제2종시설물 중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비용: 2024년 기준

구분		시설물 수 (A 개소)	제2종점검단가 (a, 천원)	제2종진단단가 (b, 천원)	의무화단가 (B=b-a, 천원)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교량	도로교량	412	12,058	62,859	50,801	20,930
	복개구조물	6	17,670	245,547	227,877	1,367
	철도교량	35	8,970	80,895	71,925	2,517
터널	도로터널	3	9,425	62,872	53,447	160

구분		시설물 수 (A, 개소)	제2종점검단가 (a, 천원)	제2종진단단가 (b, 천원)	의무화단가 (B=b-a, 천원)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지하차도	2	13,668	61,744	48,076	96
	철도터널	4	9,521	61,744	52,223	209
항만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2	36,928	169,681	132,753	266
	계류시설	6	36,711	90,310	53,599	322
댐	용수전용댐	271	22,873	62,830	39,957	10,828
	지방상수 도전용댐	6	19,216	236,781	217,565	1,305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190	5,352	55,397	50,045	9,509
	대형건축물	74	5,622	60,796	55,174	4,083
	지하도상가	4	11,157	50,556	39,399	158
	철도역시설	4	3,138	33,357	30,219	121
하천	하구둑	31	43,057	57,228	14,171	439
	수문 및 통문	82	5,803	27,594	21,791	1,787
	제방	12	6,337	73,000	66,663	800
	배수펌프장	103	11,677	43,431	31,754	3,271
상하 수도	지방상수도	16	11,448	29,689	18,241	292
	공공하수도시설	2	10,422	112,993	102,571	205
옹벽	철도옹벽	11	2,081	28,331	26,250	289
	건축물옹벽	4	1,705	28,331	26,626	107
	기타옹벽	1	7,450	48,452	41,002	41
절토 사면	도로사면	337	10,292	96,319	86,027	28,991
	철도사면	1	9,244	96,319	87,075	87
	건축물사면	2	14,557	72,845	58,288	117
	기타사면	5	12,503	47,573	35,070	175
합계		1,626	-	-	-	88,472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

[표 9] 제3종시설물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비용: 2024년 기준

구분		시설물 수 (A, 개소)	제3종점검단가 (a, 천원)	제3종진단단가 (b, 천원)	의무화단가 (B=a×b, 천원)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교량	도로교량	2,170	569	37,452	36,314	78,801
	철도교량	251	493	52,949	51,963	13,043
	육교	60	850	27,327	25,627	1,538
터널	도로터널	11	1,074	28,305	26,157	288
	지하차도	14	800	28,305	26,705	374
	철도터널	168	2,152	28,305	24,001	4,032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1,502	1,299	29,146	26,548	39,875
	대형건축물	320	1,973	50,106	46,160	14,771
	기타시설물	276	738	29,285	27,809	7,675
옹벽	도로옹벽	7	2,081	28,331	24,169	169
	건축물옹벽	21	1,705	28,331	24,921	523
	기타옹벽	2	2,438	28,331	23,455	47
합계		4,802	—	—	—	161,136

주: 제3종시설물 중 C등급 이하 시설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

□ 이상의 가정에 따라 30년이 경과한 제2종시설물과 제3종시설물 C등급 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1회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10] 30년 경과 제2종 및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30년 경과 제2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109,797	7,267	5,669	9,102	13,453	145,288
30년 경과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185,626	9,272	7,470	6,073	5,977	214,417
합계 (안 제12조제3항)	295,422	16,539	13,139	15,175	19,430	359,705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30년 경과 제2종시설물과 제3종시설물 중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진단주기가 확정될 경우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이상의 가정에 따라 제2종시설물 중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4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30년이 경과한 제2종 및 제3종 C등급 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1회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11] 제2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정밀안전진단 의무실시 (안 제12조제1항)	2,449	0	0	0	2,659	5,108
정밀안전진단 의무실시 (안 제12조제3항)	295,422	16,539	13,139	15,175	19,430	359,705
합계	297,871	16,539	13,139	15,175	22,089	364,813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현재 기준 제2종시설물 중 D등급과 E등급 시설물에 대하여 4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진단주기가 확정될 경우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진단주기가 확정될 경우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시설물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제8조제2항³⁾,, 제10조제1항⁴⁾ 및 제28조제2항⁵⁾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같음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 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로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4)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5)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시설물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시설물 합계	소계	159,847	32,922	4,922	490	618	82,380
	1종	11,101	4,877	1,870	124	80	3,077
	2종	97,385	7,515	2,212	366	538	66,151
	3종	51,361	20,530	840	0	0	13,152
중앙행정기관	소계	50,864	14,747	2,859	314	591	11,510
	1종	4,815	3,360	1,010	75	76	96
	2종	17,640	4,547	1,455	239	515	3,327
	3종	28,409	6,840	394	0	0	8,087
지방자치단체	소계	50,864	14,747	2,063	176	27	69,477
	1종	4,815	3,360	860	49	4	2,954
	2종	17,640	4,547	757	127	23	62,104
	3종	28,409	6,840	446	0	0	4,419
구분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공동구	기타
시설물 합계	소계	6,733	2,182	3,955	4,463	40	480
	1종	570	470	0	0	0	0
	2종	6,163	1,712	3,309	4,463	40	0
	3종	0	0	646	0	0	480
중앙행정기관	소계	2,225	69	2,061	3,676	7	42
	1종	136	58	0	0	0	0
	2종	2,089	11	1,449	3,676	7	0
	3종	0	0	612	0	0	42
지방자치단체	소계	4,508	2,113	1,894	787	33	438
	1종	434	412	0	0	0	0
	2종	4,074	1,701	1,860	787	33	0
	3종	0	0	34	0	0	438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안전현황」